

주요경과및향후일정

통합체육회 설립 기획단 출범

- 목적: 통합체육회 출범의 효율적 준비
- 구성: 단장 및 부단장 포함 총 12명(양 단체 6명씩)
- 기능: 통합체육회 설립 준비 총괄지원 및 집행 (조직관리, 경영지원, 산하단체 통합 지원 등)
- 운영 기간: '15. 12. 28.(월) ~ 통합체육회 출범 시까지
- 사무실: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 1층 회의실
- 연락처 * (대표메일)ksocfp@sports.or.kr

구분	직위	사무실 연락처
단장		(유정형 단장) 02-410-1820
부단장		(송명근 부단장) 02-410-1833
단원	기획조정	02-410-1821, 34, 35
	조직관리	02-410-1824, 26, 27, 32
	경영지원	02-410-1822, 23, 31

제5차 통준위 회장선거제도 전문위원회 회의

- 일시: 2016. 1. 13.(수) 14:00
- 장소: 문체부 서울사무소 제4회의실

제14차 통합준비위원회 회의

- 일자: 2016. 1. 18.(월)
- 장소: 미정

(중앙) ▶ “한지붕아래! 통합체육회 설립기획단 28일 출범” (12월 28일 스포츠서울, [자세히보기](#))

“[신년사]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체육단체 통합, 역사적 사명감 갖고 완수” (12월 30일 뉴스1, [자세히보기](#))

“[2016 빅스포츠 핫이슈] ⑤ “통합체육회” 출범이 바꾼 패러다임” (1월 6일 스포츠Q, [자세히보기](#))

(종목) ▶ “핸드볼 통합회장 선거...최태원 회장 복귀할까” (12월 24일 뉴스1, [자세히보기](#))

시·도체육회 통합추진 현황

구분	일정	내용
서울	'16. 2.	체육회-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 통합 예정
부산	'16. 1.	통합안·정관 제정 및 승인 후 통합이사회 구성 예정
	'16. 2.	통합체육회 출범 예정
대구	'16. 6.	통합체육회 출범 예정
인천	'15. 12. 28.	인천광역시(통합)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광주	'16. 2.	통합체육회 출범 예정
대전	'15. 12. 11.	대전광역시(통합)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울산	'16. 12. 16.	통합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	'16. 1. 7.	세종특별자치시(통합)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경기	'15. 12. 29.	경기도(통합)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강원	'15. 12. 16.	통합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및 명칭 결정
	'15. 12. 29.	통합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16. 1.	통합체육회 정관, 조직 구성, 급여 체계 등 마련 예정
충북	'16. 2.	통합체육회 이사회 구성 예정
	'16. 2.	통합체육회 출범 예정
충남	'16. 2.	통합체육회 출범 예정
전북	'16. 1. 5.	체육회-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 합동사무식 개최
전남	'16. 3.	시군 체육단체 통합 완료 및 통합체육회 출범 예정
경북	'15. 12. 4.	체육단체통합 설명회 및 2015시군체육회 직무연수회
	'15. 12.	통합준비위원회 발족 및 통합 승인 절차 진행
경남	'16. 3.	통합체육회 출범 예정
	'15. 12. 24.	통합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	'16. 2~3.	통합체육회 규정, 추진 세부계획 등 확정 및 통합체육회 설명회 개최 예정
	'16. 3.	통합체육회 출범 예정

통합관련주요기사

(시도) ▶ “제주 체육단체 통합 물꼬 튼다...통합추진위 출범” (12월 10일 인천일보, [자세히보기](#))

“[스포츠 돋보기]전국 첫 통합체육회 출범을 축하하며” (12월 24일 중도일보, [자세히보기](#))

“선진 체육시스템 도입...건강·행복 갖춘 市 구현, 인천광역시(통합)체육회 공식 출범” (12월 28일 경기일보, [자세히보기](#))

“통합 경기도체육회 29일 출범... 초대 회장에 남경필 지사” (12월 29일 머니투데이, [자세히보기](#))

“충북체육회·생활체육회 통합 본격화” (12월 29일 충청매일, [자세히보기](#))

“시민체육 활성화” 서울시 3개 체육단체 통합” (12월 30일 연합뉴스, [자세히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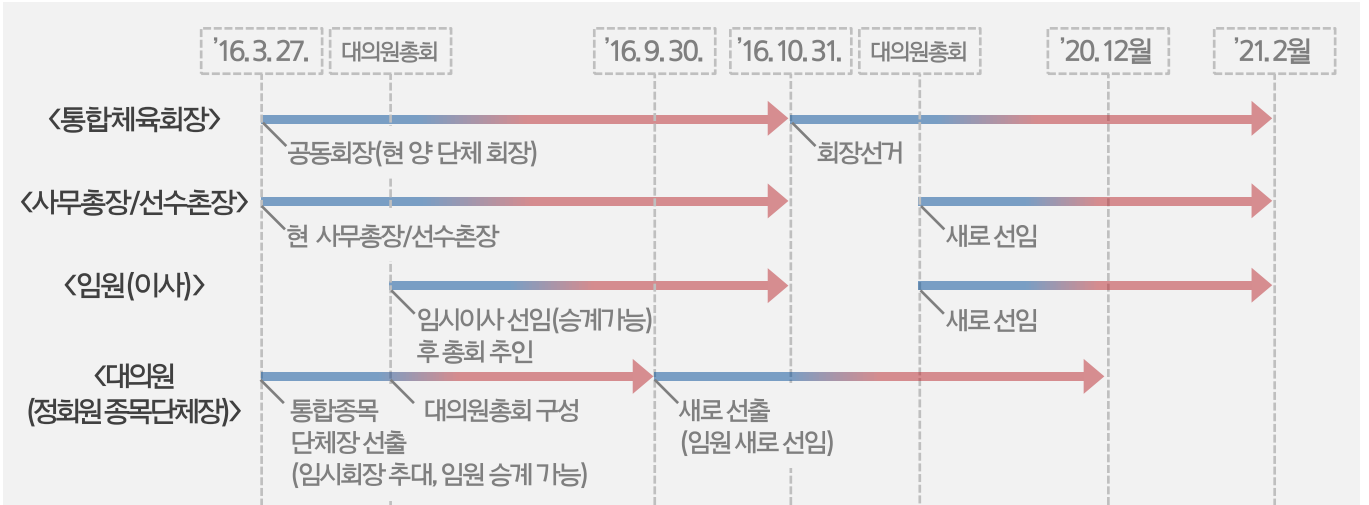
“도체육회, 지도자 연수회 7~8일 통영서 개최” (1월 6일 경남신문, [자세히보기](#))

첫번째. 무리한 일정의 경기단체 통합 추진 및 경기단체장 교체로 올림픽 준비 차질 우려

[관련 자료 ①] 통합체육회 정관(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3항 (2015. 12. 21. 제13차 통준위 안건 기준)

▶ “부칙 제2항에 따른 공동회장 및 처음으로 선임되는 이사(사무총장을 제외한다)는 대한체육회의 설립등기를 마친후 즉시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일괄하여 받아야 한다.”

[관련 자료 ②] 상기 조항의 적용에 따른 체육단체 통합 연표 (2015. 12. 21. 제13차 통준위 안건 기준)



⚠ 문제점 분석

[체육단체 통합 관련 합의(2015. 10. 19.)의 전제는 올림픽 이후의 경기단체장 선거]

- 통합체육회장 선거 일정을 리우올림픽 이후로 결정한 취지는 경기단체장 선거를 리우올림픽 이후에 실시하여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대표선수 훈련 및 지원 등 올림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 이에 따라 현 통합체육회 정관(안) 부칙에 통합체육회장 선거를 2016년 10월로 명시

[하지만 가이드라인과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르면 리우올림픽 이전 경기단체장 선출해야]

근거 규정	내용	시기
통합 가이드라인	통합체육회 출범 전 경기단체 통합 및 임시 회장 추대	'16. 3. 27. 이전
회원종목단체규정(안)	통합체육회 발족 이후 선거인단에 의한 회장선거 통해 회장 선출	'16. 3. 27. 직후

[올림픽 이전 경기단체장 선거 시 올림픽 준비에 차질 우려]

- 올림픽 전에는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 및 안전을 위해 국외전지훈련 및 현지 캠프를 구축하고, 종목에 따라 출전권 획득이 올림픽 직전(~'16. 7월)까지 진행되는 등 경기단체(사무국) 차원에서 지원 역할이 매우 큼
- 그런데 올림픽 이전에 경기단체장 선거를 실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올림픽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① 집행부 재편 시 국가대표 훈련 지원 방식 및 코치진 변경 등 발생 가능
 - ② 회장 및 집행부 교체, 사무국 인원 교체 등 사무국이 흔들리게 되면 현실적으로 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움
 - ③ 경기단체 운영 여건 상 단체장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훈련비 등 재정적 어려움 우려

💡 대안 제시

**올림픽 종목(특히 하계 종목)의 경우
통합 및 경기단체장 선거 일정을 리우올림픽 이후로 유예하는 안 검토 필요**

두번째. 임원 중임 제한에 의한 체육계 전문성 저해 및 극심한 인력 부족 사태 우려

[관련 자료 ①] 임원 중임 관련 조항

▶ 통합체육회 정관(안) 제45조(임원심의위원회)

- ① 체육회는 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임원에 대한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임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 통합체육회 정관(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9항

- ⑨ 이 정관 시행 이전에 (구)시·도체육회와 (구)시·도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시·도체육회를 설립하고, 시·도체육회의 임원이 (구)대한체육회 및 (구)국민생활체육회가 공동으로 구성된 임원심의위원회로부터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은 경우 제4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 회원종목단체규정(안) 제25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중임 횟수 산정시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시도체육회규정 제29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처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회장인 경우,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 자료 ②] 회원종목단체 통합 관련 Q&A 중 임원 중임 제한 관련 내용(2016. 1. 5. 통합체육회설립기획단)

“새로 통합되는 종목단체의 임원인 경우 (중략) 통합 이후 단체에서 임원 3선 여부 등을 계산할 때 통합 전 단체에서의 임원직 경력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즉, 중임 횟수 산정 시 통합 이전 단체에서의 임원 경력까지 포함하는 소급 적용 방안 규정

⚠ 문제점 분석

[재정적 우려: 신입회장 영입 어려움]

- 경기단체의 경우 운영 여건 상 단체장 출연금에 의존
- 중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경우 새로운 회장을 영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

※올림픽종목 경기단체장 평균 출연금: 681,211,000원(약 6억 8천만원)

[행정적 우려: 전문성 상실]

- 시도체육회 및 지역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 등은 해당 지역 내 체육계 전문가가 소수
- 중임 1회 제한 시 대다수의 전문 인력 해임으로 전문성 상실 우려

※31,095명의 체육단체 임원(문화체육관광부 2013.12.체육단체일반현황참고자료기준) 중 대다수가 해임될 것으로 예상

[법률적 우려: 헌장 및 법률 위배 소지]

- NOC 임원의 재임을 보장하는 IOC 올림픽헌장 위배 소지
-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법률상 원칙(헌법제13조제2항) 위배 소지

※올림픽헌장제27조 및 제28조 부칙 제1항 1.5 NOC 집행기구의 임원과 위원은 (중략) 그 임기는 4년을 넘지 아니하며 재임 가능하다.

💡 대안 제시

[1안]

경기단체 및 지역체육단체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 임원 중임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를 감안, 체육계 발전을 위한 전문성 제고

[2안]

1안 실현이 어려울 경우 임원 중임 관련 조항의 소급적용이라도 삭제 또는 유예 → 갑작스러운 전문인력 부족 사태 예방

자세한 내용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체육단체통합' 게시판의 '종목단체 및 시군구체육회생활체육회 통합 관련 Q&A'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